

의안번호	제 359 호
의결년월일	1996. 7. 5. (제 45 회)

의결 사항	원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6. 5. 30.

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35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5. 30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협의회 기능
 - 국민건강증진사책의 수립·시행
 -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
 -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 -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사항 등 심의 의견
-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제3조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(안제4조)
- 수당과 여비지급은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안에 지급(안제7조)

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

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
3.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4.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, 공공기관과 학계, 언론계, 보건의료관련단체,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.

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의장등의 직무)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외 사무를 처리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)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협의회에 규정된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